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 취지

- 본 청구인은 지난 2015년 5월 22일 귀기관에 최근 5년 간(2010년~2015년 5월)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일체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2015년 6월 16일 통보받았습니다.
- 귀기관은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21조)입니다.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국회 예산 및 결산서를 보면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예산이 매년 평균 80억 원 이상에 달했고, 2015년에는 83억9800만원에 이릅니다. 예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인만큼 용도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되어야 함은 물론, 마땅히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결산심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가 스스로 예산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또한 본 건은 단순히 지급된 총 금액과 수령 의원 및 사유만을 공개 청구한 것입니다. 수령한 의원의 세부 지출 내역이나 증빙 서류에 대한 청구가 아닙니다. 설령 특수활동비가 기밀을 요하는 정보 활동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한 건의 공개만으로는 개별 의원이 실제 지출한 건별 세부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구한 정보에 대해 일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처사입니다.
- 귀기관의 ‘2010년~2015년 5월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법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에 본 청구인은 ‘2010년~2015년 5월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거해 이의신청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비공개 결정 사유

(1) 정보공개청구 내용

◎ 2010년 ~ 2015년 5월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 의정활동지원비 중 1031세항(단위사업) 의정지원 230목 특수활동비, 1032세항(단위사업) 위원회운영지원 230목 특수활동비, 1033세항(단위사업) 의회외교 230목 특수활동비, 1035세항(단위사업) 예비금 230목 특수활동비

-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처(의원명), 수령인, 지급 사유(목적)

(2) 비공개 결정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

3. 이의신청 내용

가. 비공개 사유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적용의 적합 여부

- 귀기관이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 2010년~2014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상 특수활동비는 각각 의정활동지원과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의 명목으로 예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국회가 이러한 특수활동비로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비밀 정보 활동을 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본 청구 건은 단순히 지급금액과 시기, 지급처(의원명)와 사유만을 공개 청구한 것입니다. 활동비를 수령한 개별 의원의 지출 건별 내역이나 증빙 서류에 대한 청구가 아닙니다. 본건의 공개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설령 해당 비용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의원의 지출 건별 세부 내역에 대한 청구였다 가정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의 내역에 불과합니다. 국방이나 외교관계 등에 관한 협상 내용이나 외교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가 규정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처사입니다.

나. 비공개 사유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적용의 적합 여부

- 귀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곤란해 비공개 결정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에서 공개를 청구한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본 건의 청구 내역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닌 이미 집행된 예산의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에 불과합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의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를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부당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이 본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귀기관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청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